

강릉시의회 공고 제2018 - 22호

「강릉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11월 21일

## 강릉시 의 회 의 장

### 강릉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

####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#### 1. 제안이유

어린이·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의 정의를 명시하여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보행약자에 대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- 어린이 보호구역,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정의 신설(안 제2조)
- 교통안전교육 및 교통지도 규정을 신설(안 제9조)

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18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(참조 의회사무국, 전문위원, 전화: 640-4033, 팩스: 640-4070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## 강릉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강릉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“어린이 보호구역”이란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(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. 이하 같다.)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.
6. “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”이란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.

제3조제5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.

제8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
4.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

제9조 제목 “(어린이 통학로 개선)” 을 “(교통안전교육 및 교통지도)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시장은 보행약자를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9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.

1.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
2.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
3.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

③ 시장은 보행약자 관련 시설의 장애계 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,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

6. (생략)

7. (생략)

제8조(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) 시장은 보행약자들의 통행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한다.

1.·2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제9조(어린이 통학로 개선) 시장은 학교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불편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선한다.

1. 어린이보호구역 지정

2. 교통 통행방법 개선

<신설>

<신설>

5. (현행 제6호와 같음)

6. (현행 제7호와 같음)

제8조(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) -----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

4.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

제9조(교통안전교육 및 교통지도)

① 시장은 보행약자를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.

1.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

2.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

3.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

③ 시장은 보행약자 관련 시설의

장애계 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이  
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  
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  
안전을 위하여 교사, 학부모 또는  
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  
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 
있다.